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2차 교육위원회)
2021. 11. 23.(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박성원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10월 29일
- 회부일자: 2021년 11월 1일

3. 제안이유

- 교복지원 대상 학교에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함으로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의 교육 복지를 증진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학교의 정의에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함(안 제2조)

5. 조례안 예고

- 2021.11.3.(수) ~ 2021.11.8.(월) 특기할 사항 없음

6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교복 지원 대상을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, 매년 도내 1개 시설의 신입생 98명 정도가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.
- 교복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기여하려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 모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